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가단1379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제도, 박세준, 송수연, 윤인하, 이호종

피고1. 주식회사 B

2. C

변론 종결2022. 10. 12.

판결 선고2022. 11. 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542,465원과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22. 1. 6.부터 2022. 7. 12.까지는 연 9%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등

○ 원고는 2021. 4.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	D	110,000,000원	2021.4.9.-2023.4.8.	식재공급계약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계약기간: 2021.4.9.-2023.4.8., 계약금액: 110,000,000원)
-------	---	--------------	---------------------	--------------------------	--

○ D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의 주계약상 거래대금을 미납(未納)하자, 2021. 11. 16. 원고에게 보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인 11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1. 12. 6. D에게 보증보험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손실보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회사가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1. 본인·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구상채권·대위채권 등의 보전(해지 포함)·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소요된 비용

3. 소송비용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실행 등에 소요된 법적 제비용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 비용 등

4. 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이다.

나. 피고 C의 (연대)보증 관련 서류 작성 등

○ 피고 C은 2019. 4. 2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달 23. 그 취임 등기가 되었다.

○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될 때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인 입보 확인서(갑 제4호증)와 보증보험 약정서(갑 제3호증)에 서명(署名)하였다.

[갑 제3호증, 보증보험 약정서 발췌]

1. 본인과 보증인은 보증보험계약(변경·정정포함)과 관련된 이 약정서의 모든 내용을 설명받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아울러 보증인은 ① 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만 이 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점 ② 향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③ 보증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경우에는 동 상속인이 변제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을 설명받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장)		전화번호(영업장)
주소(주택)		전화번호(휴대폰)
C		
E-Mail		

[갑 제4호증, 연대보증인 입보 확인서 발췌]

1. 보험계약 및 연대보증 내용

증권번호(한도번호) E	보험가입금액(한도거래액) ₩110,000,000
--------------	----------------------------

2. 본인들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자와의 관계 및 입보사유에 따라 상기 보험계약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보호대상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자와의 관계	대표이사	해당함
입보사유	기업경영을 사실상 지배	
실질적인 동업관계		
경제적 이익을 공유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		
연대보증인 C 생년월일		

* 연대보증인 본인이 직접 계약자와의 관계 및 입보사유란의 비보호 해당여부에 '해당함'으로 기재

3. 본인이 대표이사인 경우 본인은 단순 고용임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C	
---	--

[인정 근거]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피고 회사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 원고와 피고 C 사이: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 관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D에 지급한 (보증)보험금 및 확정지연손해금 등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구상원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 관련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의 반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피고 C의 처남인 F가 피고 회사를 실제 경영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F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피고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파주지점 담당자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나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관할 세무서인 파주세무서에 제출된 피고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나 제6호증)에는 2020. 4. 11.부터 F가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F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F가 피고 회사를 실제 경영하였고 피고 C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 C에게 청구하는 책임은, 피고 C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책임이 아니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부담하는 책임이다.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졌는지, 실제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등의 사항은 피고 C의 보증보험계약상 연대보증책임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의 대표이사 명의 대여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C을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연대보증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하지만,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피고 C이 F와 함께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주명부(갑 제10호증)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 C 본인도 원고에게 제출한 연대보증인 입보 확인서(갑 제4호증)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기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취지로 자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을나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을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연대보증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C은, F가 피고 C에게 학교 급식 대금을 수령하려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속였고, 원고도 피고 C에게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 없이 자서(自署)를 요구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자서를 해야만 학교 급식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특히 주채무가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식재공급계약상 물품대금채무인 점 등에 근거하면, F가 피고 C에게 학교 급식 대금을 수령하려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책임 등이 일반인이 알지 못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책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C은, D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F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원고는 D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였어야 하는데도, 원고가 이미 F의 피고 회사 실제 소유 및 경영을 잘 알고 있었거나, 보험금 지급 전의 보험계약 내용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에 따라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지급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하지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D과 식재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법인(法人)으로서 자연인(自然人)인 대표이사와는 법인격(法人格)이 다르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대표자에 그칠 뿐 주식회사 그 자체는 아니므로, D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청구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구상원리금 110,542,465원과 그중 남은 구상원금 11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확정지연손해금 계산 다음 날인 2022.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인 2022. 7. 12.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9%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현중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